

맞벌이 가족의 양육지원 정책제언

송 혜 림(울산대학교 교수)

저출산·고령화로 특징지워지는 최근 우리 사회의 생활 변화는 다양한 요인의 복합적 상호관계 속에서 야기되는 결과이며 동시에 또다른 생활양식으로 변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특히 저출산의 경우, 우리 사회 미래 노동력의 감소라는 차원에서 정부와 국가는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이에 대응하는 제도적·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사실 그 방향은 어떻게 저출산 현상을 막을 것인가, 즉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애를 지금보다 더 많이 낳게 할 것인가에 있다. 그래서 금전적 지원, 모성보호제도의 확산, 가족부담의 국가분담 등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내어 놓고 있다. 그러나 정작 아이를 낳고 기르는, 그래서 노동력의 재생산을 온 몸으로 해내야 하고 또 책임져 온 '현장'의 당사자들이 갖고 있는 고민과 갈등을 얼마나 제대로 분석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를 제대로 풀어내고 국민의 요구를 수렴할 수 있는 대안을 내어놓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사실 저출산의 본질적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여성의 취업률 증가에 따라 자녀양육과 교육이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점이며, 이로써 자녀를 이전 세대보다 적게 낳기 혹은 낳지 않기를 선택하면서 자신의 삶을 조절해가는 개별 가족들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맞벌이 가족의 양육지원이라는 이슈가 저출산과 함께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출산의 당사자와 그 가족의 상황을 심도깊게 분석하고 이러한 자료와 정보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정책과 제도의 모색은 우리 연구자들의 공통과제이며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보다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할 이슈일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본 연구의 주제가 되는 맞벌이 가족의 양육지원 정책제언은 일단 여성과 남성의 직장-가정 양립이라는 요소를 통해 개별가정이 안고 있는 부담에 접근하여 행위당사자의 진술을 분석하고 이에 토대한 정책적·제도적 대안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일차적인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동안 맞벌이 가정의 가사노동을 포함한 가정경영, 자녀양육과 교육, 노인/장애인/환자에 대한 부양 등과 관련된 실태를 분석한 연구들이 축적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사례면접을 통해 맞벌이가정이 경험하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가정경영 중에서도 자녀양육으로 집중된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다. 특히 연구자는 맞벌이 가족의 생활에 대하여 아내, 남편, 자녀라는 주체의 경험을 배려하는 균형감각을 연구에 투입하고 있어 복합적인 생활실태를 심층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또한 직장생활을 하는 기혼여성들이 사회생활에 노출됨으로써 단지 경제적 이유 뿐 아니라 발전과 성장의 원리도 중요한 관심이라는 점, 남편의 가사참여에 역사와 맥락이 있어 시간제약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점, 남편의 가사참여에 있어 갖게 되는 책임감이 아내에게는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맞벌이 가족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관심과 지원의 절대적 부재 혹은 제한으로 인해 단지 열악한 상태에만 처해있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이나 독립성 또 책임감을 스스로 개발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

다는 점 등 면접분석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흥미로운 사실들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서 맞벌이 가족의 자녀양육방식을 확대가족 네트워크에 의존하기, 시설 이용하기, 대리인에게 맡겨 키우기, 어머니의 직장생활 조절하기, 자녀 스스로 돌보게 하기 등으로 유형화하여 당사자들의 개별적 해결방식 그리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근가능한 자원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총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또한 맞벌이라 하여도 여전히 가사노동과 자녀양육/교육의 책임은 여성에게 집중된다는 점, 연구의 당사자들이 공보육이나 공교육에 대한 국가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지 않고 개별적인 전략으로 ‘곡예’ 하듯, 그래서 다시 하라면 도저히 못할 것 같은 일상생활을 ‘치루어낸다’는 점 등을 통해 현실적 한계를 지적하고 있으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적 자본의 형성을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공보육/교육체계가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제도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분석결과 그리고 제안에 기초하여 몇가지 논의거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초점이 정책제언에 집중하고, 그래서 맞벌이 가족의 가정경영 그 중에서도 양육부담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이끌어내고 있는데,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는 현재 맞벌이 체제로 살아가고 있는 가족 뿐 아니라, 맞벌이로 시작하였지만 중간에 (주부가 혹은 남편이) 취업을 중단한 가족의 양육사를 면접하여 분석하였다면 보다 통합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현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맞벌이체제를 유지해 가는 가족의 실태를 통해서도 유용한 자료를 획득할 수 있겠지만, 취업을 중단한 사례들은 보다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 어떤 지원책이 있었으면 취업을 중단하지 않아도 되었겠는가 하는 내용들을 기술해 낼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보다 현실적이고도 효과적인 대안을 추출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선정한 사례들을 가계소득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요소로 구분하여 볼 때, 저소득가족을 좀 더 많이 포함하였으면 실제 개별가정에 필요한 정책적 대안이 보다 분명하게 제시될 수 있었을 것이다. 여성 취업의 원인 중 경제적 요인은 여전히 중요하며,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취업을 중단할 수 없는, 즉 맞벌이를 지속해야 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가사와 양육부담을 국가에서 분담하는 정책과 제도가 더욱 절실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산층 이상 가족의 경우 그들의 경제적 여력으로 가사와 양육부담을 경감시키는 다양한 장치를 이용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에서, 맞벌이 가족의 양육지원 정책은 저소득층 맞벌이 가족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맞벌이 가족의 양육지원정책은 우선적으로 국가사회적 차원에서의 공적·제도적인 지원책을 의미하며 이는 ‘양육’에 대한 국가의 분담이라는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양육을 포함한 가사노동의 분담을 구별할 때 가족 내에서의 분담 그리고 가족 외부로 부터의 분담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때 국가의 정책적 지원은 가족 외부로부터의 분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가족 내에서의 분담은 곧 가족원 간 분담이며, 특히 부부 간의 분담에 초점을 둘 때, 본 연구에서 제시되듯이 여전히 주부에게 가사와 양육의 일차적 책임과 부담이 배분되는 생활 양식은 어떻게 해결할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정책적 지원을 통해 공보육, 공교육의 정착·확산되더라도, 이로써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가정 구성원 스스로 해내야 하는 가사와 양육의 부담은 가족원 스스로 수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지적하듯 가사와 양육에 대한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책임’은 한 개인의 지향성과 관점, 의식을 포함

한다는 면에서 가정과 사회 전반에 걸친 평등한 문화로의 변화과정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과정은 매우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며 그만큼 더 어려운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책적 대안에서도 가정 밖의 시설이나 제도를 통한 지원 뿐 아니라 민주적 가족관계, 평등한 가사분담 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내용, 즉 ‘문화정책’에 대한 제언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가사노동은 더 이상 여성만의 노동이 아니라는 점, 가정을 휴식의 장소라고 규정하려면 이는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돈 벌고 애 보는 일을 성별에 따라 구분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그러기 위해서는 남녀 모두 취업을 위한 자격증과 학력, 전문성 뿐 아니라 가사와 양육의 기술과 숙련도를 균형있게 학습하고 취득해야 한다는 점 등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 및 생활 속에서의 실천이 필요하다. 따라서 제도적 교육과정과 그 내용의 개편, ‘양성평등’관점에서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홍보, 캠페인 등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방안도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네째, 본 연구에서 면접한 가족들 그 누구도 공보육에 대한 국가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데에서 심각한 또 하나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자녀양육을 사회적 과제가 아닌 개별 가정의 ‘사적인’ 사안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이다. 문제는 이러한 한계가 비단 자녀양육 뿐 아니라 노인·장애인·환자 돌보기에도 적용될 것이라는 점이며, 그러는 한, 즉 사회구성원으로부터의 ‘강한 요구’가 제기되지 않는 한 국가의 정책은 일방적이고 또 실제 ‘현장’의 상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데 있다. 정책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건강한 삶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정책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권리와 책임을 함께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책제언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연구를 통해 제시된 문제점을 반영하여, 후속 연구들은 개별가정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분담해야 한다는 강력한 문제제기가 왜,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한 분석과 제시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이로써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정책의 개발과 집행의 효과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 가족의 당사자들의 경험에 기초하였기 때문에 정책제언의 기초가 되는 현행 영유아 보육 체계와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을 결여하고 있다. 사례가 소수라는 점 그리고 제보자들 가운데 영아 보육기관에서 영아를 양육한 경험이 있거나 방과후 프로그램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다는 점이 이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자연스럽게 접근한 제보자들이 그러한 경험이 없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영아보육기관의 접근이 어렵다는 점이나 방과후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양육지원 정책을 분석하고 제언을 하고자 연구를 기획하였다면 소수 사례라도 포함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사례들이 모두 지방도시에서 채집되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가 포함된 연구가 필요한 이유는 확대가족의 네트워크의 활용가능성이나 영아탁아모의 전문성과 가격 등이 상이할 것이며 가족의 기타 자원상황이나 출퇴근 소요시간이나 교통수단과 같이 직업생활과 관련된 요구가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